##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70 발의연월일: 2021. 9. 8.

발 의 자:최승재·강대식·곽상도

구자근 • 권명호 • 김성원

김형동 · 박대출 · 박수영

송언석·엄태영·윤두현

이명수 이 용 이종성

이주화 · 정희용 · 조명희

지성호 · 하영제 의원

(209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사회 청렴을 위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 데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가액이 최대 10만 원으로,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 원을 초과하는 품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가액 제한으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임. 특히 '20.1월 이후 1

년반 이상 코로나 유행이 계속되며 경기회복이 불확실해진 가운데 최근에는 4차 확산 본격화에 따른 강력한 방역조치로 그동안 힘들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여 소상공인을 총력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하여는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코로나 19로 누적된 피해를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8호 신설).

법률 제 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소상공인기본법」의 소상공인이 생산·가공·판매하는 20만원 이하의 선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과 축산물가 공품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	③
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	
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8.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소상공인
	기본법」의 소상공인이 생
	<u>산·가공·판매하는 20만 원 이</u>
	<u>하의 선물로서 「농수산물</u>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
	물과 농수산가공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과 축산물가공품
<u>8.</u> (생 략)	<u>9.</u> (현행 제8호와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